



제 39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딥페이크 영상물 임시조치 대상 추가
및 워터마크 미표시 영상물 규제 〉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384호)

2022.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임시조치 대상에 추가(안 제 44조의2 제1항 제2호)	2
2. 워터마크 미표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및 제 74조 제1항 제2호의2)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2. 1. 13.

다. 회 부 일 : 2022.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임시조치 대상에 추가(안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요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u>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여</u> ----- ----- ----- ----- -----

현행	개정안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 1.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u> 2. <u>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규율이 곤란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일

1)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적인 규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임.

-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2. 워터마크 미표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의2)

가. 개정안 요지

○ 일반인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딥페이크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규정함(안 제74조 제1항 제2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

현행	개정안
3.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생략)	<u>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특정한 코드 또는 부호를 삽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일반인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딥페이크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이용자 오인 및 당사자 명예 실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 첫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의무 주체, 표시 방법, 대상 등을 개정안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안은 딥페이크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벌칙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의무 주체, 표시 방법, 대상 등의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 둘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워터마

크를 삽입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떤 정보가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²⁾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허위의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230

2)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157)